

데이터베이스의 法的保護 (I)*

丁 相 朝**

I. 머리말

知的財産權法은 한편으로는 발명과 창작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발명과 창작이 널리 전달·활용되게 함으로써 인류전체의 기술과 지식의 총량이 증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한편으로는 발명가 및 창작자의 발명과 창작에 관한 재산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및 이용자의 기술과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양자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 사회가 知識集約의 사회 또는 情報化社會로 이전하고 通信技術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집 또는 가공하는 자와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소비하는 자와의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집·가공하는 자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그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解釋論 또는 立法論이 빈번히 제기되고 논의된다.

인류는 종이책의 제조방법 또는 인쇄술의 커다란 발전, 사진기술 또는 영화기술의 발전, 음반의 형태와 제작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문학과 예술 및 과학지식의 전달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20세기 말의 디지털기술(Digital technology)과 컴퓨터기술의 확산은 정보와 지식의 전달방법을 거의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조그만 CD-ROM 한 장 속에 30여권 백과사전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저장·전달될 수 있고, 뉴스와 판례 등 각종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정리되어 電算網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情報의 處理·貯藏·傳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의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에서 수행한 미국연수에 참가하신 분들의 재정적 후원으로 구입하게 된 지적재산권 분야 서적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히면서, 미국연수단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한 정보기술에 의하여 유통되는 정보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知識集約的 사회 또는 情報化社會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중요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자의 이익과 그러한 데이터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는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著作權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著作物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부터 제기되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94년 1월 7일에 개정되어서 데이터베이스 즉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편집저작물로 보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에도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만이 보호되는 것이고 데이터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데 당해 데이터를 허락없이 추출하여 경쟁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또는 금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금지를 하는 경우에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필요한 창작성 요건부터 시작하여 저작권법 이외의 법제도에 의한 보호 및 특별법적 보호방안 등의 순서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II. 編輯著作物의 創作性

1. 創作性의 기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대부분의 著作權法이 著作物의 創作性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저작물의 개념 정의에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¹⁾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創作性이 저작물성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저작물 創作性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英美의 판례에 의하면 저작물의 表現이 타인의 저작물의 表現으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 獨自的인

(1) 저작권법 제2조.

勞力, 技能 및 資本의 投入의 結果이면 된다고 해석되고 있어서,⁽²⁾ 저작권법의 역할에 관한 勞動理論의 영향에 의하여 형성된 기준이 지배적인 기준으로 되어 왔는데 반해서,⁽³⁾ 獨逸과 日本 등에서는 英美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도 있으나,⁽⁵⁾ 문법해설에 관한 저작권침해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문법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임이 인정되므로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⁶⁾

본래 저작권법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경제적 인센티브로 하여 창작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문학, 예술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의 낮은 수준의 창작성개념보다는 높은 수준의 창작성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관점에서 위의 대법원판결도 이해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창작성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의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 회람어문법강의만에 한정된 창작성 결여의 판단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축소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2. 선택·배열의 創作性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성의 요건은 편집저작물에 대해서도 요구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編輯著作物의 경우에는 그 소재되는 사실이나 정보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

(2) *Jeweler's Circular Pub. Co. v. Keystone Pub. Co.*, 281 F. 83, 88 (2d Cir. 1922); *University of London Press Ltd. v. Universal Tutorial Press Ltd.*, [1916] 2 Ch 601.

(3) 그러나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112 L.Ed.2d 358에서의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미국 저작권법의 해석상 창작성 기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예컨대, *Nixdorf v. Nixdorf*, BGH 4 Oct. 1990, [1991] *EIPR* 301; *Systems Science v. 東洋測器會社* (東京 高等裁判所 1989년 6월 20일 決定), *Juristo*, No. 943 (15 Oct. 1989) at 81.

(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6)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면 전체로서의 편집저작물을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하는 점에서, 편집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동시에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다름의 대상이 된 사례들을 보면, 예컨대 시력표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서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판시된 바 있고,⁽⁷⁾ 국한문옥편의 경우에도 그 글자의 선택과 배열 및 해설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된 바도 있으며,⁽⁸⁾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관한 소위 “조세총서”라고 하는 편집물도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게재하고 그에 대한 해설과 관련 판례 및 예규를 나열하는 방식의 배열과 해설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된 바 있다.⁽⁹⁾ 다만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해 보기가 어렵다. 예컨대 시력표의 경우에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이용되어온 문자, 숫자, 도형, 그림 등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력표 배열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의미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고, 국한문옥편이나 조세총서의 경우에 그 해설에 창작성이 있음은 명백하지만 그러한 해설을 통상적인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러한 옥편이나 총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의 소재 선택과 배열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미술사연표의 표절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미술분야 이외의 인접분야의 역사적 사건 및 사실도 함께 수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연표 구성방식이기 때문에 당해 연표에 있어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⁰⁾ 또한 대법원은 성서 주해보감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성서 주해보감이 한글 개역성경에 있는 主題聖句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¹¹⁾ 가장 최근의 판결에서는, “두리두리”라는 한글교육교재가 동물과 그 의성어 및 색깔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글자교육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소재나 카드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대법원은 특히 그러한 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

(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도2101 판결.

(8) 서울고등법원 1962. 5. 18. 선고, 61나1243 판결; 대법원 1986. 7. 16. 선고, 68다938 판결 참조.

(9)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합67215 판결; 허희성,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산권 침해, **계간 저작권** (1996년 여름호), 제41면 참조.

(10) 대법원 1993. 1. 21. 선고, 93마1081 결정.

(1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판결.

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¹²⁾

3. 美國에서의 創作性 基準

美國에서는 編輯著作物을 포함한 著作物 일반의 創作性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를 살펴보아 왔다. 이러한 전통적 기준은 본래 미국에서 저작물이 著者の 독자적인 “勞力과 資本의 투입(Sweat of the brow)”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실이라고 파악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창작성 기준은 많은 종류의 事實著作物(works of facts) 또는 자료목록이나 주소록과 같이 다수의 사실과 정보의 집적에 가치가 있는 저작물들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經濟發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17세기와 18세기의 미국에서는 서부개척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러한 서부개척에 있어서 새로 개척되어 가는 지역의 상세한 지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사실저작물에 해당되는 이러한 地圖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힘입어서 지도의 제작·판매에 충분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지도의 著作物性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 지도가 예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創作性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도작성에 필요한 資料와 情報의 수집에 독자적인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창작성 기준은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사건⁽¹³⁾을 계기로 하여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에서는 電話番號簿의 著作物性이 문제되었는데,⁽¹⁴⁾ 지방법원과 抗訴法院은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을 전제로 해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했는데,⁽¹⁵⁾ 美國聯邦大法院은 전화번호의 수집에 노력과 자본을 투입한 것만으로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집한 전화번호의 선택에 창작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알파벳트 순이라고 하는 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배열한 전화번호부는 창작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화번호부에 저작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Feist 사

(1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13) 112 L.Ed.2d 358 (1991).

(14) 참고로, 일본에서도 성명별 전화번호부의 창작성은 부인되지만 직업별 전화번호부의 창작성은 인정된 사례가 있다: 日本 오오사카지방법원 1982. 3. 30. 선고, 1981(7)4728; 곽경직, “Protection of Database in Japan”, 저스티스 제29권 제2호 (1996. 9), 제102면.

(15) Ringer, Copyright in the 1980s, 23 *Bull. Copyright Soc’y* 299, 305 (1976).

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편집저작물 또는 사실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으로서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라고 하는 기존의 기준을 버리고 “구성사실 및 정보(facts)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이 창작적인가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에 관한 항소법원들의 상호모순되는 판결들에 대해서 중대한 결론을 제시해 주었다.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라고 하는 기존의 기준이 더 이상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Feist판결이 編輯著作物 또는 事實著作物뿐만 아니라 文藝著作物(artistic works)과 機能著作物(functional works)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저작물의 기초가 된 아이디어 또는 정보에 대한 경쟁업자와 소비자들의 접근과 이용을 널리 허용하는 것이, 문학과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저작권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저작자의 排他的權利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점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III. 데이터베이스의 創作性

1.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선택·배열

우리나라 改正 著作權法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은 명백히 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점이 모두 다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첫째로 어려운 문제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겠는가 하는 창작성 요건 충족의 문제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종이책의 경우에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주식정보데이터베이스거나 법령데이터베이스이거나 그 속성상 관련된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게 되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에 창작성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만일에 제한된 범위의 소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기준이 창작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진 선택기준으로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작성을 갖춘 선택이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종이책의 경우에는 그 소재들이 종이 위에 평면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배열의 창작성이 쉽게 판단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그 소재되는 데이터들이 모두 컴퓨터의 디스크나 테잎 속에 단순히 집적되어 있을 뿐이고, 창작적인 배열과는 전혀 관계없이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의 검색·출력 프로그램의 도움에 의하여 비로소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출력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소재의 배열은 아무런 창작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나 훈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을 편집한 편집물이나 번역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데이터베이스나 판례데이터베이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설사 당해 데이터베이스에 법령의 개정연혁이라거나 관련 정보를 부가하였다든지 또는 판례의 초록을 함께 부가하였다 해도 저작권법적 보호는 개정연혁이라거나 판례초록과 같은 부가 정보만에 한정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보호될 수는 없으며, 특히 당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법령이나 판례를 출력하여 다시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보다 넓게 파악해서, 검색·출력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자료 집합물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고 동 검색·출력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배열방식으로 출력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재 배열의 잠재적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컴퓨터 속의 데이터들은 아무런 창작적 배열 없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그러한 데이터를 모두 출력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다시 새로운 검색·출력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새로운 배열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업자는 투자회수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2. 美國 判例

전술한 Feist판결을 따라서 다수의 분쟁이 해결되어 왔는데, 그 구체적인 결론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Warren Publishing, Inc. v. Microdos Data Corp. 사건⁽¹⁶⁾에서는 Feist판결을 확대해석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창작성 요건을 특허법에서의 진보성 요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다수의 데이터필드(data fields : 자료분류항목)가 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용이하게 채택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보호에 필요한 창작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Feist판결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16) CCH Corp. L.Dec. 26,928 (N.D.Ga. 1992).

로 아주 예외적이고 정당화되기 어려운 견해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⁷⁾ 또한 가장 최근의 사례인 ProCD Inc. v. Zeidenberg사건⁽¹⁸⁾에서는, 미국전체의 전화번호 가입자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 우편번호, 산업코드(census industrial code) 등을 모두 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CD-ROM으로 제작한 SelectPhone이라고 하는 상품을 원고가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데, Matthew Zeidenberg라고 하는 위스콘신대학 학생이 동 CD-ROM을 구입하여 동 제품 속에 입력된 정보를 모두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download)하고 당해 정보를 Internet을 통해서 제공하였음에도, 전화번호 관련 정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로는 Corsearch, Inc. v. Thomson & Thomson사건⁽¹⁹⁾이 있다. Thomson사건은 商標檢索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사건으로서, Feist판결을 따르면서도 상표검색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경쟁업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 이용을 거절한 것이 저작권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문제된 Thomson데이터베이스는 상표가 문자만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 또는 색채 등 어떠한 요소로 되었는지에 따라서 모든 상표에 분류기호를 달아 놓았고, 지정상품의 분류도 독자적으로 하였으며, 고의적으로 변형시킨 문자로 된 상표(예컨대 “Kar Kraft”)는 올바른 영어명칭을 보충하여 입력시키는 등 데이터처리·저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가장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였다. 자료분류항목 또는 data fields에 있어서도 상표의 내용, 최초사용일, 상표권자, 지정상품으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등록일자도 표시하면서 동 등록일자를 연도표시항목과 연도 및 월·일 동시표시항목을 구별하고, 상표의 문자내용이 접두어·접미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항목들을 구별하여 입력함으로써, 자료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작된 것인바, 미국연방법원도 그러한 노력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기에 충분한 데이터배열의 창작성을 갖추도록 해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아이디어와 表現의 융합(merger of idea and expression)”理論이 편집저작물에 적용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가 좁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상당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그 구성 소재들이 한정된 방법으로 정리·배열될 수밖에 없어서 그 아이

(17) William S. Strong, Database Protection after Feist v. Rural Telephone Co., *Journal of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1994), p. 44.

(18) 39 USPQ2d 1161 (CA 7th Circuit, 6/20/1996).

(19) 792 F. Supp. 305 (S.D.N.Y. 1992).

디어와 표현이 융합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한도에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등이 발전된 소위 人工知能(Artificial Intelligence)에서와 같이, 정보베이스 또는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와 論理엔진(inference engine)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논리엔진에 의하여 지식베이스의 지식과 정보가 일정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는 경우에, 유사한 지식베이스가 경쟁업자들에 의하여 이용될 것이고 지식베이스 자체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범위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융합으로 인하여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²⁰⁾

IV. 著作權法 이외의 보호 法制度

1. 契約法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자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의 사이에 이용허락계약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업자와 이용자 모두 당해 계약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계약법에 의한 보호가 부분적으로나마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를 가능하게 해 준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법적보호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계약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자는 계약당사자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즉 對世的인 보호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에 한정된 보호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의 미국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법에 의한 보호는,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과연 어느 시점에서 소비자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것인가 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이 있어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한 보호가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설사 그러한 이용허락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취득자와의 사이에서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英國의 1988년 저작권법은 “전자형태의 저작물(a work in electronic form)이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複製 또는 改作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利用許諾契約하에 판매되어서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에는, 상이한 특약이 없는 한, 당해 양수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²¹⁾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사하

(20) Arthur R. Miller,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Databases, and Computer-generated Works : Is Anything New Since CONTU?, 106 *Harv. L. Rev.* 977(1993).

(21) Section 56 of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는 바가 많은 입법례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계약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그 문제점이 잘 제기된 최근의 美國 사례로는 앞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 있는 ProCD Inc. v. Zeidenberg 사건⁽²²⁾을 들 수 있다.

ProCD Inc. v. Zeidenberg 사건에서 원고 Pro-CD사는 3000여종 이상의 전화번호부에서 얻은 자료와 9개 자리의 우편번호 및 산업분류기호(census industrial code)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CD-ROM을 SelectPhone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게 되었으나, Matthew Zeidenberg라고 하는 위스콘신대학 학생이 동 CD-ROM을 구입하여 동 제품속에 입력된 정보를 모두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download)하고 당해 정보를 Internet을 통해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고 동시에 소비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license)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연방항소법원이 검색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프로그램까지 복제한 것은 아니고 Feist 판례⁽²³⁾에 비추어 볼 때 전화번호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가장 주된 논쟁은 소비자와의 사이에 유효한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이용허락계약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용허락계약인 소위 “shrinkwrap license”란, 플라스틱이나 셀로판랩으로 압축포장(shrinkwrap)되어 날개로 팔리는 소프트웨어 상품에서 소비자들이 동 제품의 압축포장을 뜯고 동 포장 속의 이용허락계약(license)조건에 반대하여 제품을 반환하지 않는 한 동 이용허락계약이 Pro-CD 등 개발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기입되어 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되는 것을 예상하여 만들어진 압축포장 속의 이용허락계약을 의미한다. 상인들은 “end user license”라는 표현을 선호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보편적인 본 용어 즉 “shrinkwrap license”를 사용한다. 이 사건에서의 shrinkwrap license는 전화번호정보의 판매 또는 기타의 무단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internet에의 이용이 그러한 license위반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License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었다. 10여년 전부터 shrinkwrap license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면서, 특히 개발업자와 소비자와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위 영미계

(22) 39 USPQ2d 1161 (CA 7th Circuit, 6/20/1996).

(23)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8 USPQ2d 1275] (1991).

Paul J. Heald, The Vices of Originality, 1991 *Sup. Ct. Rev.* 143, 160-68 참조.

약법상 계약당사자관계(Privity)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shrinkwrap license가 소비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 왔었다.⁽²⁴⁾ 이 사건에서도 연방지방법원은 그 license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그 근거는 그 조건들이 상품의 외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구매자의 승낙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²⁵⁾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shrinkwrap license에 관한 논리구성을 파기하면서, Zeidenberg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동의한 조건의 하나는, 그 거래가 shrinkwrap license에 종속한다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즉 연방항소법원은 당해 CD-ROM 제품 외면에 예고를 하고, 압축포장내부에 구체적인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 놓고, 당해 이용허락조건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 환불과 소프트웨어를 반품할 권리들을 설정해 둔 것은 개발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 있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²⁶⁾ 연방항소법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이 세부적인 조건의 합의에 선행하는 거래는 흔히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구매자 또는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와 보험기간 등 필수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대리점에 가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증권을 교부받는다. 연방지방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보험료가 지급된 이후에야 보험가입자들은 당해 보험증권의 조건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당해 조건들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shrinkwrap license 자체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연방저작권법의 계약법에 대한 우월적 효력 또는 선점적 효력도 문제되었다. 즉 美國 聯邦著作權法은 상이한 내용의 州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先占的 효력(preemption)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비록 원고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확실한 표현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서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CD-ROM판매에 수반된 “shrinkwrap license”를 강제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계약은 계약당사자만을 구속할 뿐이고 배타적 권리를 창설하지는 않고 따라서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창설된 계약상의 권리는 연방

(24) 예컨대, 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847 F. 2d 255, 268-70 [7 USPQ2d 1281] (5th Cir. 1988) 참조.

(25) 908 F. Supp. 654.

(26) 계약의 표준화는 상품이나 용역의 표준화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둘 다 대량 생산과 대량 분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 E. Allen Farnsworth, *Farnsworth on Contracts* Section 4.26 (1990) 참조; *Restatement (2d) of Contracts* Section 211 (1981).

저작권법 제301(a)조에 의해 선점되는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州法은 聯邦著作權法에 의하여 先占(pre-emption)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된 것이다.

2.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표지의 혼동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등의 행위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구제수단을 원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한도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직접적인 보호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타인의 투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도용(misappropriation)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 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와 같은 보호는 간접적이고 불완전한 보호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營業秘密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당경쟁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또는 그러한 부당경쟁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더욱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관하여 참고로 미국에서 최근에 내려진 판례를 살펴본다.

The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v. Sports Team Analysis and Tracking Systems, Inc. (STATS)사건⁽²⁷⁾에서, 원고 미국농구협회(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 NBA)는 자신이 주최하는 농구게임이나 농구게임결과(승패와 점수) 그리고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서 창작적인 선택·배열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연방지방법원의 프레스카판사(Judge Preska)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원리를 원용하면서 NBA는 농구게임에 관한 실제시간방식의 정보("real-time" information : 이하에서는 "실시간 정보"라고 약칭함)를 공급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따라서 NBA의 허락없이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운동경기단체를 분석하고 운동경기성적을 추적해 나가는 피고 STATS 등과 같은 단체들에게는 최신의 운동경기정보 또는 실시간 정보만이 가치를 가진다. 마치 투자분석 또는 투자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분 1초라도 최신의 주식정보만이 가치를 가지고 과거의 주식정보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뿐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의 상업적 중요성을 인식한 STATS는 Motorola와 함께 합작하여 Major League Baseball로부

(27) 1996 Westlaw 435031 (S.D.N.Y. July 22, 1996).

터 허락을 받은 후 야구게임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언론매체와 PC통신 및 삐삐(pager)에 거의 실시간으로 공급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STATS는 프로농구게임에 대해서도 유사한 실시간정보공급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NB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작하였던 것이다. NBA는 자체적으로 유사한 실시간정보공급서비스를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STATS의 서비스에 대해서 著作権·商標權의 침해 및 不正競爭防止法 위반 등을 근거로 하여 신속하게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프레스카판사는 운동경기에 대한 해설 또는 녹화보도는 창작적인 카메라 조작과 해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지만, 운동경기 그 자체 또는 그러한 운동경기에 대한 단순한 사실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러한 운동경기의 성적이나 관련된 통계자료 또는 기타의 관련 정보 그 자체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NBA가 저작권을 가진 농구경기방송물에 포함된 정보를 추출하여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러한 정보 자체는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것이다.

프레스카판사는 원고의 운동경기정보에 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인하였지만, 피고 STATS가 원고의 허락 없이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 공급하는 것은 소위 부정경쟁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보공급서비스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적인 보호를 인정한 대법원 선례로는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사건⁽²⁸⁾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뉴스공급의 선두를 다투는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INS가 AP뉴스정보가 게재된 동부신문 초판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추출하여 서부신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도 INS가 정보 자체만을 추출하여 이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INS가 AP의 경쟁업체로서 그러한 AP의 뉴스정보를 도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적인 접근을 한 선례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그후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무단으로 운동경기를 방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프레스카판사는 그러한 선례를 전제로 하면서 이 사건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시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NBA는 농구게임에 관한 정보를 방송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데 다양한 통제를 해왔고, 둘째, 피고 STATS와 Motorola가 농구게임에 관한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당

(28) 248 U.S. 215, 39 S. Ct. 68 (1918).

해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있어서 원고 NBA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셋째, STATS와 Motorola는 당해 정보의 생산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오직 원고 NBA의 투자의 결과를 상업적으로 도용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를 중시하면서 프레스카 판사는 피고의 경기정보 도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금지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프레스카 판사에 의해서 실시간 경기정보 공급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된 선례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NBA가 보호받는 것은 농구경기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실시간 공급서비스에 한정되어 인정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경기정보를 정리·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도 아닐 것이고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경기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가 소비자에게 읽혀질 수 있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D-ROM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조작과 情報檢索 또는 외부 출력(print-out) 등을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와 동시에 그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도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그 이용자가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경쟁업자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출판업자로서도 자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著作權表示 기타의 저작권보호의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시장가치가 정보검색의 효율성에 달려있고 그러한 정보검색의 효율성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V.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特別法

1.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保護指針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일련의 데이터 집합물

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를 위한 指針”⁽²⁹⁾을 마련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의 특별법적 보호(sui generis protection)를 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특히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방송국이 자신의 방송프로그램일정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여 Magill 출판사가 그러한 방송프로그램일정을 TV Guide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따라서 방송국의 저작권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방송프로그램일정에 대한 TV Guide에의 게재를 금지하는 것이 유럽공동체조약(Treaty of Rome) 제86조에 규정된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로마조약 해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유럽공동체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방송국이 합리적인 이용료의 지급을 전제로 하여 방송프로그램일정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한 당해 방송국은 저작권 남용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³⁰⁾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데이터베이스의 특별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도 마련하였다. 즉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데이터의 취득과 검증 및 가공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이외의 법제도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지침이 마련되었다. 동 지침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체 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발췌나 재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발췌’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substantial part)을 다른 매체에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이용’이란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의 배포, 임대, 온라인 전송이나 기타 유형의 이용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 지침은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³¹⁾

동 지침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완료일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5년간 존속하고, 동 기간 만료 이전에 당해 데이터베이스가 일반대중에게 공급된 경우에는 최초로 일반대중에게 공급된 날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29) Directive 96/6/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30) Judgement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241/91 and C-242/91 : 6 Apr. 1995).

(31)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제7조.

적으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경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변경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새로이 투자하여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간주될 수 있는 한,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는 자체의 보호기간이 별도로 인정된다.⁽³²⁾

2. 美國의 데이터베이스보호법(案)

미국에서는 전술한 Feist⁽³³⁾판결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논쟁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혹자는, Feist판결에서 대법원이 편집저작물의 소재의 선택·배열의 창작성이라고 하는 창작성요건은 美國聯邦憲法의 知的財産權條項⁽³⁴⁾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연방의회는 동 헌법상의 입법권의 행사에 의해서는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연방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이 이미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고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도 유사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보호조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Moorhead의원 등은 미국하원의회에 “데이터베이스投資및지적재산도방금지에관한法律(Database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Antipiracy Act of 1996)案”⁽³⁵⁾을 제안하였다. 미국연방헌법의 지적재산권 조항에는 창작성 요건이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은 연방상거래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부여한 미국연방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법안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동 법안의 목적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산업(information industry)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조사, 수집, 진위검증, 편집, 공급 등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또는 기타 자원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투자한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정부에 의하여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러한 정부생산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개인이나 개인기업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만이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32)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제10조.

(33) 112 L.Ed.2d 358 (1991).

(34) Art. I, Sec. 8. cl. 8.

(35) H.R. 3531 of May 23, 1996.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보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의 존속기간은, 데이터베이스가 최초로 공표되거나 최초로 상업적 이용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신의 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같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경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별도로 25년의 존속기간이 인정되고, 특히 그와 같이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추가된 정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되는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에 대한 권리의 존속기간이 영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동 법안에 의하면, 권리보유자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현실 또는 잠재적 시장을 해하는 한, 제3자가 허락없이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발취하거나 이용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된다.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art)에 해당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내용인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제3자가 계속적으로 발취하거나 이용 또는 재이용함으로써 그 누적적인 효과가 권리보유자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현실 또는 잠재적 시장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3자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VI. 결 론

우리사회가 지식집약적 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로 되어 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과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활성화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제작하는 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와 투자회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외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둘러싼 상당수의 분쟁이 법원에 제기된바, 창작성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재되는 정보와 지식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의 수집과 검증 및 가공에 대부분의 투자를 한 개발업자로서는 경쟁업자가 그러한 소재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여러번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내재적 한계에 직면하여, 미국 판례 가운데는 계약법에 의한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고, 유럽연합은 그 회원국들로 하여금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작권이외의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指針을 마련한 바 있으며, WIPO와 미국연방의회에도 유사한 조약안과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약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에도 커다란 제약이 내재되어 있고 유럽연합의 지침에서와 같은 특별법적 보호(*sui generis protection*)에 대해서는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부당하게 제약받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창작성 요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와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못한 실정이어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외국 판례와 해석론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판매계약을 이용허락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 문제는 민법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의 그것과 전혀 달라서 유사한 보호를 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부당이익의 법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정기국회에는 “데이터베이스보호및진흥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어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 동 법안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토대로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국민에게 유통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한 공공기관이 공표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저작권등록을 하도록 요구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법안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안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개발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필요성과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에의 접근보장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정면으로 대결하여 해석론 또는 입법론상의 논쟁이 시작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수행해야 할 보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이 글은 문제제기에 그치도록 한다.

〈Résumé〉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in Korea

Sang Jo Jong*

There might be several ways of protecting databases in Korea. An explicit statutory provision for database is found in the Copyright Act which was amended in 1994 to include databases into the category of compilations. It is still unclear, however, what extent of originality is required for databases to be protected as compilations. Likewise the U. S. Copyright Act, the Korean counterpart also states that compilations are copyrightable only when they involve original authorship in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ir components such as data or preexisting materials. Since most of electronic databases covers all the relevant data beyond the efforts of selection of data and, also, they are mostly retrieved with the aid of searching program amongst data which are not arranged in a traditional sense, it remains to be seen what kind of electronic databases are entitled to copyright protection. In addition, the Korean Copyright Act also provides for an exception to the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 i. e. copyright protection is not available for compilations or translations of statutes, regulations issued by the government and municipal bodies, judgements and other judicial decisions (Section 7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t is implied from the exception that electronic databases consisting of statutes, regulations, judgements, or judicial decisions are not entitled to copyright protection even if they involve substantial originality in the perspective of the arrangement of statutes and other components.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grants any legal protection for databases in cases similar to the recent U. S. case "The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v. Sports Team Analysis and Tracking Systems, Inc. (STATS)." The Korean UCPA covers only a limited number of unfair practices relating to unauthorised use either of competitor's well-known marks, names, or other external distinctiveness or of other's trade secrets and which do not include misappropriation of competitors data. There is a slight chance of obtaining remedies under the Civil Code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ough : Misappropriation of competitor's data which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trade secrets might still be subject to the liability under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as proscribed in the Civil Code. It is not certain, however, whether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applies to misappropriation of databases since databases lacking originality may not be regarded even as a property as required by the doctrine under the Civil Code. And, also, it may be possible to say that when a specific database is not entitled to copyright protection then taking data out of the database may not be regarded as an illegal act as required by the doctrine under the Civil Code.

Contractual protection for databases in Korea might face some limitation or a defense of invalidity : Contractual protection may not be available with regard to third parties who are not contractual parties. And, also, an injunction may not be available to prevent the alleged infringer from taking and using the data themselves. Shrink-wrap licences might also face the defense of invalidity on the basis of violating the public policy under Section 103 of the Civil Code.